내부통제기준 제 5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, 마스턴투자운용 정보교류차단 내역을 공개합니다.

**Ⅰ.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**

① 투자자가 보유한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

②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

③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

④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,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

⑤ 부동산(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) 및 특별자산(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)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

⑥ 집합투자‧투자일임‧신탁재산의 구성내역‧운용 관련 정보 중 1개월이 지난 정보

⑦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회사에서 지정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

**Ⅱ.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**

➤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

: 헤지펀드실, PI운용팀, 리츠부문(부문 외 리츠 담당부서 포함), 경영총괄 제외 운용부문(개발부문, 국내부문, 대체부문, 해외부문, F&F부문)

➤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

① 집합투자재산, 투자일임재산 및 리츠투자재산, 기타 투자기구(PFV 및 SPC포함)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

②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

③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현황에 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

**Ⅲ.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**

 ➤ 거래주의 목록 및 지정기준

: 미공개중요정보로 분류될 수 있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입수한 경우, 해당정보에 직접 노출되어 있는 임직원 이외의 자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 발행인과 관련한 판매, 거래, 조사분석자료의 제공, 사적 거래 가능함

① 공개되지 않은 딜 또는 거래에 회사가 관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주요정보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

* 회사가 M&A나 IPO를 포함한 기업금융업무를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경우

②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금융거래 관련 자문을 하기로 한 경우

* M&A, 기업금융거래 등이 고객 또는 잠재고객이 동 거래와 관련하여 이를 진행시킬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경우

③ 회사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거나 기업금융자문계약을 체결을 한 경우

➤ 거래제한 목록 및 지정기준

: 미공개중요정보로 분류될 수 있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입수한 경우 해당 운용부서 및 정보를 입수한 유관부서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거래제한

 ① 특정발행인과 관련하여 널리 일반에 알려진 거래에 회사가 투자자문, 매매·중개, 인수인, 공동주간사 등으로 참여하는 경우

 ② 기타 법상·계약상 또는 사회통념상 회사가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경우

* 사례)당사의 상장리츠 및 상장증권을 운용하는 경우, 해당 운용본부에 한해 운용하는 아래 지정된목록 거래 금지를 원칙으로 함
* 당사가 운용하는 상장리츠
* 당사가 영향을 미치거나 미공개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상장증권

**Ⅳ.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**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거래 유형** | **거래의 예시** | **관리방안** |
| 회사(母회사 포함, 이하 같음)가 고객과 경쟁적/이해상충적 거래에 참여 | 증권 인수를 하는 동안 회사가 다른 고객에게 동 증권 거래에 참여할 것을 추천 | ․해당/후속거래 중단․고객에게 공개․Business Units 분리 |
| 회사가 다른 계열사가 발행한 또는 소유한 증권을 고객에게 판매‧추천하는 경우 | ․고객에게 공개․해당 거래 중단 |
| PF팀이 A사에 펀딩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, Loan 담당부서에서 동 자문에 근거하여 같은 회사에 신디케이트론을 추진하는 경우 | ․해당/후속거래 중단․고객에게 공개․Business Units 분리 |
| 회사가 고객의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는 경우(Agency of both side) | 금융‧M&A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있는 복수의 고객에게 동시에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| ․해당/후속거래 중단․고객에게 공개․Business Units 분리 |
| 한 고객에게 증권 발행 자문을 제공하고, 다른 고객에게 해당 증권 거래 참여를 추천하는 경우 |
| 회사가 고객의 경쟁자와 거래를 주관하는 경우(Competitive transaction) |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복수의 고객에게 금융‧M&A 관련 자문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| ․해당/후속거래 중단․고객에게 공개․Business Units 분리 |
| 고객 비공개정보를 이용하여 회사의 사익 추구 |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고객의 비공개정보를 은행 영업 지원의 목적으로 타 부서에 제공하는 행위 | ․해당/후속거래 중단․고객에게 공개 |
| 고객 주문을 받은 증권과 관련하여 프롭트레이딩, 인수 참여 등을 하는 경우 | ․해당/후속거래 중단․고객에게 공개․Business Units 분리 |
| 회사가 거래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일반 거래와 같은 수준의 계약조건(Terms and Conditions)일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거래 (Internalization of transaction) | 회사가 계열 금융회사에 주문을 하거나 주문을 받는 경우예) 본점-지점간 단기자금거래 | ․고객에게 공개․계약조건 수정 |
| 회사가 인수·중개·공모‧사모를 하는 금융상품을 계열 자산관리사가 운용하는 고객 자산‧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경우 |
| 회사가 고객의 비용으로 경제적 이익 획득 / 손실 회피(Violation of fiduciary duty) | 고객의 주식발행에 관해 인수를 하거나 조언을 하면서 다른 고객에게 해당 거래를 권유하는 경우 | ․해당/후속거래 중단․고객에게 공개․Business Units 분리 |
| 계열회사가 자기계정으로 보유하거나 발행·구조화한 증권을 투자자에게 추천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| ․고객에게 공개․해당 거래 중단 |
| 회사가 인수하는 증권을 발행한 자의 대출을 다른 계열사가 회수함으로써 인수한 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리스크를 전가 | ․해당 거래 중단 |
| 회사가 제3자와의 거래에 따라 정상적인 수수료 외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(Violation of fiduciary duty) | 회사 등의 직원이 고객과 이해상충을 야기할 수 있는 선물 및 접대 등을 받는 경우예) 아웃소싱 업체로부터 선물/접대를 받고 더 저렴한 비용의 아웃소싱 업체를 거절하는 행위 | 해당 거래 중단고객에게 공개계약조건 수정 |

**Ⅴ. 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**

* 임직원의 업무를 수행에 있어 위법,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 또는 보상을 추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
*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의 거래에 대해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조치하고, 곤란할 경우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매매 그 밖의 거래 불가
* 이해상충 발생 우려종목, 회사명 등을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지정하고 회사의 계산에 의한 매매 및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제한 및 관리
*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식별기준을 마련하여 설정하고, 정보교류차단 대상부문 및 담당조직을 설치·운영
* 상시정보교류 허용 임원 지정 및 정보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·감독하도록 함
* 정보교류차단 대상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대상 부문과 비대상 부문 간의 업무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
*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접근의 정당한 사유가 있고, 사전승인을 받아 최소한의 범위로 제공하는 등의 예외적교류원칙을 정의하고 후선업무목적의 예외적 교류 허용
* 계열회사 등 제3자와의 정보교류 및 이해상충 유형별로 지정하여 구분·관리
* 정보보교류차단의 기록 유지 및 정기적 점검, 임직원 교육 및 정보교류차단 내역공개 등